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1월 30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
-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명시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의회의결 심사 근거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함.(안 제1조)
-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변경함(안 제15조)
- 제71조를 제79조로 변경함(안 제77조)
- 제78조를 제86조로,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함(안 제89조)

나. 예산 및 기금상 조치수반 의안 재원조달방안 제출 명시

- 제20조제3항 신설(안 제20조)

나. 기금관련 심사 근거 마련

-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서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및 심사 의결 과정을 준용토록 제72조의2 신설(안 제72조)

3. 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말취 : 별첨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, 제71조, 제79조, 제83조, 제86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3조”를 “제71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중 “제55조제1항”을 “제6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,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예산안과 결산심사”를 “예산안과 결산 등 심사”로 한다.

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2(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)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7조제1항중 “제71조”를 “제79조”로 한다.

제89조제1항중 “제78조”를 “제86조”로 하고 동조제3항중 “제75조”를 “제8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 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5조제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 (생략)</p> 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신설)</p>	<p>제1조(목적)제7조 </p> <p>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 ②..... 제 63조제 1항..... 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,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3조(의사정족수)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개의)한다.

②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(산회)를 선포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79조(의원의 자격심사)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피심의원(피심의원)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,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
제83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6조(징계의 사유)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